



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검 토 보 고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 설치〉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01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정안의 취지 및 내용	4
나. 제정안의 입법 배경	6
다.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8
2. 주요 조문별 검토	13
가. 목적·정의·기금의 설치 (안 제1~3조)	13
나. 기금의 조성 (안 제4조)	14
다. 기금의 용도 (안 제5조)	16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회계처리 등 (안 제6조·제8~13조)	18
마.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심의회 (안 제7조)	1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지연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6. 7.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현행 첨단산업 관련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투자촉진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관련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치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효과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일반예산 외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금을 설치하여 관련 산업 및 기술을 보호·육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다.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은 정부출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4조).

라.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은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 특화단지 조성·운영 및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사업,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인력 등 양성 및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심의회를 둠(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여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며,

목적, 정의, 기금의 설치·구성·용도·관리 및 운용·회계,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심의회, 목적 외 사용금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 13개 조항과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으로 구성됨.

[표 1] 제정안의 구성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제2조(정의)	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제3조(기금의 설치)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제4조(기금의 조성)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제5조(기금의 용도)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조(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심의회)	부 칙 (시행일)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략산업등¹⁾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고(안 제3조),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며(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 특화단지 조성·운영 및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사업,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인력 등 양성 및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

또한, 기금의 관리·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되,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 산업통상자

1) “전략산업등”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 및 제정안 제3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칭함.

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심의회를 두어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7조).

나. 제정안의 입법 배경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은 투자세액공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금을 설치하여 해당 산업 및 기술을 보호·육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다음 [표 2]에서 살펴보듯, 예컨대 미국, 대만, EU,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전략산업 중 AI, 로봇 등 미래산업의 핵심 근간이 되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행

정적·제도적 지원은 물론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투자세액공제, 보조금 지급 등 재원이 소요되는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표 2] 세계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 지원 현황

구분		미국	대만	EU	일본	우리나라
생산시설 보조금		\$390억 (약 53조원)	-	€430억 (약 64조원)	¥2조 (약 17조원)	-
세액 공제	시설	25%	5%	-	-	15~25%
	R&D	-	25%	-	6~12%	30~50%
기간		~'26년	~'29년	~'30년	-	~'24년

* 출처 : 대한상의('24.6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고,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특정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므로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나며,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 신축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음.

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일반예산 외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정안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의 설치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취지이므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산업은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인력양성, R&D 지원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23. 7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하여 ‘27년까지 5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소요자금을 지출하고 관리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동 기금은 정부출연금,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예수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각종 부담금이나 특별세 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는 경우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반면, 너무 적은 금액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신설하는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를 고려하는 경우 개략적인 지원 용도와 적정 규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동 기금이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²⁾에서 적용하는 기금 신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금설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 기금의 재원이 대부분 정부출연금 등 의존재원으로서

2)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후략)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곤란하여 해당 조항의 제1호 및 제3호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인프라 투자, 첨단산업특화단지에 대한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이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므로 제4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둘째,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금 설치를 위한 조항 또는 장(章)을 신설하는 것이 입법의 경제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는 부분임.

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대부분의 용어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인용하고 있고, 기금의 조성·용도·관리 및 운용 등 법안의 모든 내용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법률체계 내에서 작동하고 있음. 따라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 외에 현행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기금설치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도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시행 중으로, 해당 법의 개정을 통한 조문 신설만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임.

셋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다른 기금과 달리,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업은행법’) 제29조의2 등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 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 제38조 등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정부 보증채로 운영되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자는 입장으로,

기금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제정안에 따른 기금과 산업부가 제시한 방식의 기금 중 어떠한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지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부는, 제정안에 따른 「국가재정법」상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기금’은 현행 예산 및 기금과 동일한 절차로 편성·집행됨에 따라 신속·유연한 지원에 한계가 있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함에도 국가 재정을 주된 재원으로 하므로 재정에 부담이 되거나 지원 규모가 실제 수요에 비해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산업은행법의 ‘기간산업안정기금’, 공급망안정화법의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정부 보증채로 운영되는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먼저 공적 성격을 띤 대규모의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비해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의 관리 및 국회의 감시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정부 보증채를 통해 조달한 금액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이 필요하므로, 보조금 지급, R&D 지원, 인프라 투자 등 회수가 어려운 성격의 지출보다는 대출, 보증, 투자 등 향후 회수가 가능한 자금 용도에 보다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금의 용도에 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정부 보증채를 발행하기 위한 ‘국가보증동의’가 필요한바, 기금의 재정이 부실화되는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목적·정의·기금의 설치 (안 제1~3조)

제정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의 명칭과 설치 목적, 법에서 사용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용어의 정의, 기금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3] 조문내용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하며 오인·혼동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혼란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바, 정의조항을 두어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기술하려는 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5조(기금의 용도) 제5호는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연대협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기금의 조성 (안 제4조)

제정안은 기금의 재원을 정부출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4] 조문내용

제 정 안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제 정 안
4.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기금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기금의 수입을 자체수입원과 정부내부수입 등(정부 출연금, 전입금)으로 재원을 구분할 때, 대부분의 사업성 기금은 자체수입원을 두는 경우³⁾가 많으나, 일부 기금은 정부내부수입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⁴⁾도 있음.

동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내부수입 이외에 기금의 자체수입원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기금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보임.

물론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금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원활한 재

3)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24년 예산 기준 자체수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등으로 3조 5,301억원이며, 정부내부수입은 공자기금예탁원금 회수 등 2,891억원임.

4) '24년 예산 기준, 과학기술 진흥기금(자체수입 79억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251억원), 기후대응기금(3,020억원, 2조 777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3,307억원, 1조 8,750억원), 남북협력기금(436억원, 1조 4,565억원), 문화재보호기금(109억원, 1,526억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84억원, 927억원), 양성평등기금(165억원, 7,582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2억원, 85억원), 청소년육성기금(103억원, 1,554억원) 등임. (출처: 한국재정정보원, 「2024 회계·기금 운용 구조」)

원의 확보 없이는 필요한 지출 소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의 용도와 성격에 맞는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4조의 ‘기부금’을 ‘자발적 기탁금’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⁵⁾는 국가 및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접수를 금하되,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은 타법 등에 근거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부금’을 ‘자발적 기탁금’으로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기금의 용도 (안 제5조)

제정안은 기금의 용도를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 특화단지 조성·운영 및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사업,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인력 등 양성 및 양성기관에 대한 지

5)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후략)

원 사업 등 8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5] 조문내용

제 정 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
2. 특화단지 조성·운영 및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사업
3.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전문인력 등 양성 및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5.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8.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기금의 용도는 법률의 제정 목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육성·보호와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금융지원 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특히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 제5조제8호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회계처리 등 (안 제6조·제8~13조)

제정안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 회계연도, 회계처리, 회계기관, 기금 계정의 설치, 목적 외 사용금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 6] 조문내용

제 정 안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기금 관리 및 운용 등 기금 사무에 관한 내용은, 현행 「국가유산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단,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금 관리의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보고 근거, 위탁 사무 및 지원 대상에 대한 감독 근거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심의회 (안 제7조)

제정안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의 심의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7] 조문내용

제 정 안
제7조(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회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⁶⁾, 동 규정을 반영하는 것

6)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6. 9.>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

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단, 개정안은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전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산업, 금융, 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 등의 요건, 위원 정원, 민간위원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74조는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7조제1항 각 호에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국가재정법」 제76조는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에 따라 유사·중복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분과위원회(소위원회)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문 의 처
02)6788-5460